

육아정책 소식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 전문성 강화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 역할을 명확히 정립 및 협업 강화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 지원 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 및 신고를 활성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입양실무지침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여 입양체계의 국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

구분	근거법령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 등·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림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마련 	시행규칙 제33조의2, 3월 30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사유 추가 운영수탁자가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부정위탁계약: 3월 30일 시행 평가미흡: 10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 첨부)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시행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새 학기 ‘우리 아이 마음 돌보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Wee)클래스' 누리집(<https://www.lanweeclass.c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금)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eedoctor>)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맞돌봄·맞살림 실천으로 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 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총 2차시 8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시에서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며, 공감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상호 지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차시에서는 맞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돌봄·맞살림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 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 접속하여 직장교육으로 신청 후 희망과정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

1차시 「함께하는 아내·남편 되기」	2차시 「맞돌봄·맞살림 스킬 업(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맞벌이 부모의 자화상(가정에서의 역할) ② 맞벌이 부모의 자화상(사회에서의 역할) ③ 일하며 아이키우기, 왜 이렇게 힘들까 ④ 더불어 성장하는 부부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맞돌봄 인식 업(up) ② 맞돌봄 스킬 업(up) ③ 진정한 가사분담이란? ④ 함께 웃는 맞살림 스킬 업(up)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설된 맞돌봄·맞살림 교육 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육아와 가사 문화가 일상화되고,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등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